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이병진 · 조인철
소병훈 · 이해식 · 박희승
김영환 · 황명선 · 최혁진
서삼석 · 안태준 · 박수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,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,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.

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용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창업자, 상인,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용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

가.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

나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

다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

제17조제2항 중 “비용을”을 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으로, “보조”를 “보조·융자(이차 보전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(생 략) 1. ~ 5. (생 략) <신 설>	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가.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나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자
6. ~ 7. (생 략)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 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<u>비용을</u>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<u>보조</u> 할 수 있다.	6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용의 <u>전부 또는 일부를</u> ----- <u>보조·융자(이차 보전을 포함</u> <u>한다)</u> 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